

2019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2019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2019 KIDP Case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2019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2019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2019 KIDP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2019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차례

01.

들어가며

02.

디자인권리보호 제도 소개

- A. 디자인법률자문단
- B.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 C. 디자인표준계약서
- D. 디자인공지증명
- E. 디자이너경력관리

03.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 A. 지식재산권 관련
 - B. 계약 관련
 - C. 디자인 용역비 관련
 - D. 회계 및 노무 관련
 - E.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찾아보기

들어가며

2019 KIDP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A.

들어가며

디자인권리보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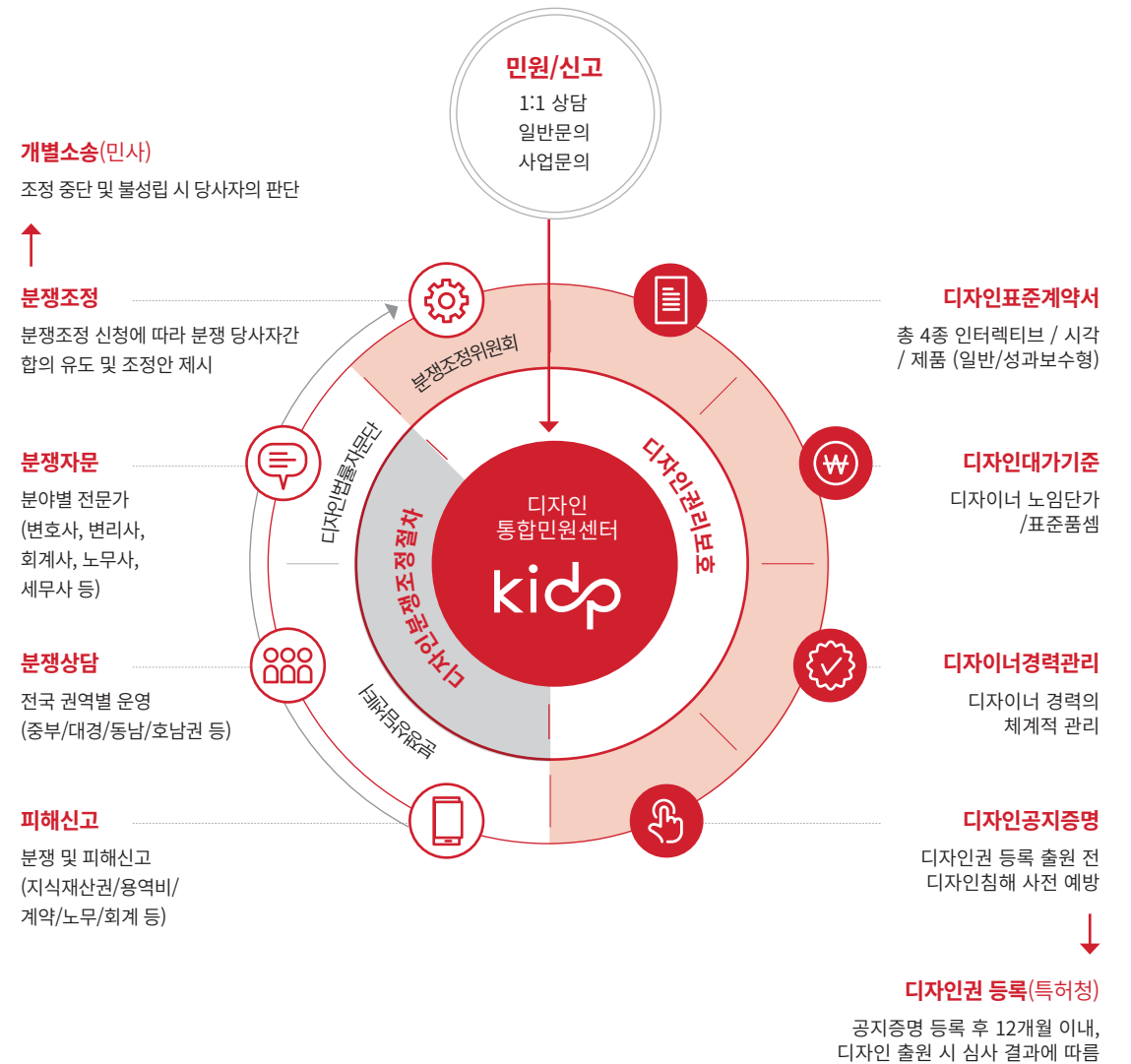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 19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했습니다.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면서도, 이를 가치 있는 지적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디자인 창작물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등 권리 침해 및 불공정 사례가 만연해 있는 것이 업계의 고질적 문제였습니다. 디자인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 제정은 공정한 디자인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인권과 창작물로서의 디자인 권리가 엄격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구축하여 디자인표준계약서를 제정 및 보급하였고, 디자인 유관 기관들과 협업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디자인 관련 법률 상담 지원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들여 창작한 디자인 창작물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디자인 권리보호’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앞으로도 디자인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디자인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며 디자인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디자인계와 디자이너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통합민원센터 운영체계도
drights.kidp.or.kr | 1899-1397



디자인 권리 보호 제도 소개



-
01. 디자인법률자문단
 02.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03. 디자인표준계약서
 04. 디자인공지증명
 05. 디자이너경력관리

2019 KIDP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및 충청권·대경권·동남권·서남권)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 간 1:1 맞춤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며, 미해결 분쟁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디자인전문기업, 중소기업 및 디자인업계 관련자

지원 내용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과의 1:1 맞춤상담 서비스

신청 방법

전화, 우편, 방문 접수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 1577-4964 | ko-dia@daum.net

부산디자인진흥원 | 051-790-1044 | notemio@dcb.or.kr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053-740-0031 | greenjim22@dgdg.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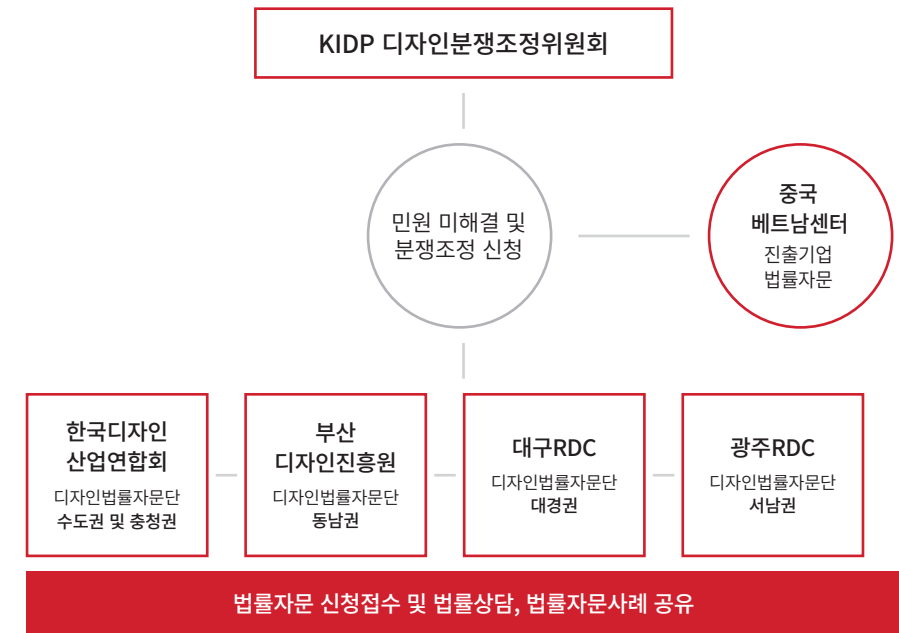
광주디자인센터 | 062-611-5053 | dpaak002@gdc.or.kr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지원실

drights.kidp.or.kr | 031-780-2128 | hsoojin01@kidp.or.kr

운영체계



자문절차

- 1 피해사례 접수
 - 디자인 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 신고센터
 - 법률상담 신청(신청 방법: 전화, 우편, 방문 접수)
- 2 피해 유형별 DB화 및 상담 연결
 - 접수 내용 파악 후 피해 유형별 분류 DB화
 - 담당 자문위원 지정 및 신청인과의 1:1 상담 연결
- 3 신고서 검토 및 법률상담 진행
자문위원 진행
 - 신고서 검토
 - 상담 신청인과의 1:1 상담 진행(전화 상담 / 필요시 방문 상담 가능)
- 4 법률상담카드 작성 및 전달
자문위원 진행
 - 담당 자문위원 1:1 상담 및 자문 종료 후 신고센터에 법률상담카드 제출
- 5 자문의견 전달
 - 신고센터 담당자문위원으로부터 받은 법률상담카드를 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법률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재확인

02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디자인 관련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안을 제시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끄는 조정 기구입니다. 분쟁 당사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법적 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지원 대상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중에 있는 자

지원 내용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 단, 권리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외

신청 방법

웹사이트, 우편, 팩스, 방문 접수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 가능

디자인피해신고센터 및 법률자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각 지역 디자인센터 및 디자인산업연합회가 공동운영하는 디자인피해신고센터 및 법률자문과정을 이용해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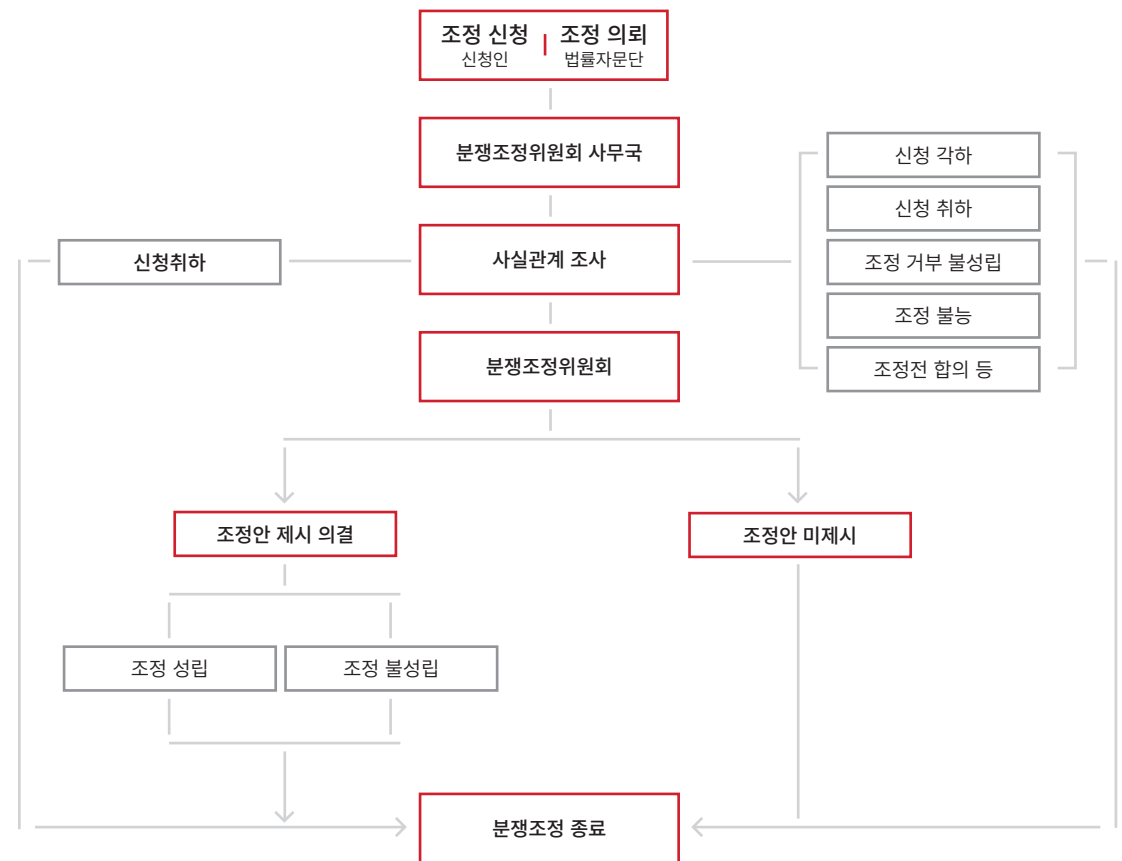
사실관계 조사

디자인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피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되고 피신청인에게 는 답변서 양식을 포함하여 조정 안내서류 등이 함께 송부됨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drights.kidp.or.kr | 031-780-2251 | wave@kidp.or.kr

운영절차



03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공지증명은 권리 획득 및 방어, 활용 등 법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공지증명의 장점

- ① 디자인 출원 등록 전 창작 사실(창작자, 시기)을 대외에 공지하여, 개발 과정 중 창작된 디자인 안이 외부에 공표, 공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모방(Dead Copy)을 방지
- ② 특허 등록을 거치지 않은 디자인 안에 대해서도 경쟁업체 등의 모방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에 대응 가능

* 공지증명(공개)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 · 특허 심사 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 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공지증명의 차이점

| 구분 | 디자인등록 | 디자인공지증명 |
|-------|-------------------------------------------------------------------------------|---------------------------------------------------------------|
| 목적 | 독점 · 배타적인 디자인권 발생 | 공지 사실 증명 |
| 처리 기간 | 출원 후 6개월 내외 | 짧음(1~3일) |
| 권리 범위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디자인보호법 제 92조) | - 독점 · 배타적 권리 없음 - 등록 후 12개월 이내 디자인 출원한 경우 디자인권(재산권) 확보 가능 |
| 신청 절차 | - 출원인이 출원수수료 납부와 함께 디자인 등록 출원서 제출 - 실제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료 납부를 통해 디자인권 발생 | -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을 제출 - 실제 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절차가 간단함 |
| 비용 | - 출원 비용: 94,000원 - 설정등록료(1~3년분): 75,000원 - 연차등록료: 4년 후부터 3년 단위로 누진제 | - 건당 20,000원(대학생 이하 무료) (변리사 대행 불필요, 직접 등록 가능) |
| 보호 기간 | 존속 기간 20년 |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3년간 |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지원실
drights.kidp.or.kr | 031-780-2128 | hsoojin01@kidp.or.kr

디자인공지증명 신청 절차



04

디자인표준계약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디자인 업계 내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늘리고 공정한 디자인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으며,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 디자인 및 성과보수(제품디자인관련)와 관련된 총 4종의 표준계약서를 배포 중입니다.

*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평등한 계약 관계

‘갑’과 ‘을’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 관계 명시



피해예방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용역단계별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



계약서 4종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 성과보수(제품디자인 관련)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drights.kidp.or.kr | 031-780-2251 | wave@kidp.or.kr

05

디자이너경력관리

디자이너경력관리란 디자이너 개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 확인 제도입니다. 근무했던 직장의 폐업·합병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번거롭게 여러 근무지에 요청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경력 관리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경력 확인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력 단절을 최소화 하고 경력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증빙 필요 시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에서 경력 확인서를 상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경력관리 신청 절차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이용 수수료 체계

입회비
30,000원
최초 신청 시

디자이너경력관리 최초 신청 시 1회 납부

변경 수수료
건당 3,000원

신규 신청 이후 경력 수정 및 추가 시 변경 신청에 대해 건별로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
1부당 3,000원

신규 신청 시 1회 무료 발급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1부당 수수료 납부

문의처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designcareer.kodfa.org | 02-3445-5198 | dsncareer@hanmail.net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2019 KIDP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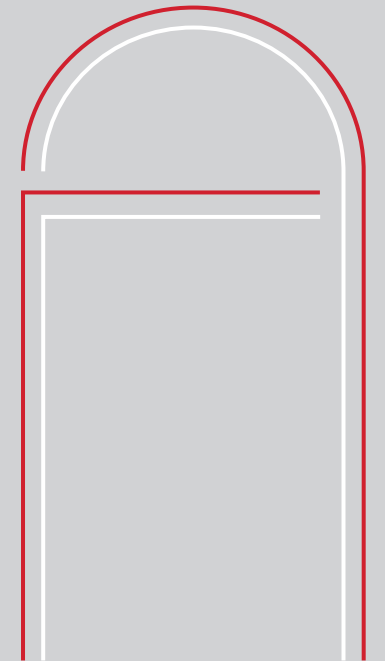


-
- A. 지식재산권 관련
 - B. 계약 관련
 - C. 디자인 용역비 관련
 - D. 회계 및 노무 관련
 - E.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찾아보기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지식
재산권
관련



2019 KIDP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2019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01

제3자의 디자인 도용 의혹 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저희는 스티커 등을 디자인·제작·판매하는 업체로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누리꾼이 해당 SNS에 저희가 해외 업체의 스티커를 도용했다는 사실무근의 댓글을 올려 계정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누리꾼이 다른 계정을 만들어 계속해서 비방조의 댓글을 올리고, 이러한 내용을 메시지로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특정 디자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 한 판단이 이루어질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법률 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귀사의 디자인이 해당 해외 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았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으므로 판단됩니다. 물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귀사가 댓글 게재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거나 댓글 게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과정에서 침해 여부가 간접적으로 다뤄질 소지가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2. 귀사의 SNS 계정은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므로 귀사는 해당 댓글을 게재하는 아이디(계정)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게재자가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이로 인해 귀사의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귀사는 게재자를 신용훼손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재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 게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행위를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역

서울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제3자의 디자인 도용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 방안

상당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02

타사에서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2018년 11월부터 인터넷 개인 쇼핑몰에서 'G' 제품을 판매해 왔고 2018년 12월에 해당 제품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신청하여 2019년 2월에 디자인 출원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9년 1월경 D사에서 당사 해당 제품의 사이즈와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매 금지 및 승소 여부 등 법적 대응 방법을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상당자 A가 제작하는 'G'는 침해자 D가 제작·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길이나 패턴 모양, 밴드 비율 등의 디자인이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상당자 A는 2018년 12월 'G'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여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자의 'G'에 대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받는 등의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자의 등록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판매하여 업으로서 상당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4조).

상당자 A는 침해자 D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디자인법 제113조 제1항), 위 금지 청구에 부대하여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3항). 상당자 A의 디자인이 비밀 디자인으로 설정 등록된 것이 아닌 한, 상당자 A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침해자 D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손해도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한편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디자인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대응 방안들은 상당자 A의 디자인권이 침해자에 의하여 침해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침해자 D의 제품 디자인이 상당자 A의 제품 'G'의 그것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침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 소송 제기 등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역

부산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자사 제품의 디자인 도용으로 인한 피해

상당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03

섬유공예품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섬유공예품의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부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와, 기획한 교육 책자의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는지도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이란 물품 또는 물품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므로, 섬유공예품(리본)을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물품으로 만들었다면 디자인보호법 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독립된 물품을 만든 것이 되므로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물품성은 형태성과 함께 디자인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성요소이며, 이와 같이 결합된 물품들이 결합을 통해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물품을 이루어야만 디자인 출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이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을 경우 디자인 출원을 통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합 이전의 각각의 부품(물품)들에 대해 타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아두었다면 물품을 판매할 경우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을 하실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예디자인과 같은 수업의 교육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아니라 그 ‘표현’임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는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하고 구체적 표현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하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으로 설명됩니다. 즉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저작물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모두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의 보호가 미치는 부분은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한 창작적인 표현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구분을 두는 이유는 저작물에 내재된 사상, 관념에서 여러 가지 표현 형태를 가진 수많은 창작물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를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권리로 부여하게 된다면 다양한 창작물의 생성을 가로막음으로써 저작권법에서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문, 문학,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예 디자인 수업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는 기능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 전북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섬유공예품의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 여부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04

어느 공모전 수상작이 저희가 고객사에 납품한 로고 디자인과 매우 유사해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음반 제작업체에게 로고를 제작 납품하며 해당 로고 디자인의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귀속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로고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들 중에서 저희가 납품한 해당 로고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작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공모전 주최 측과 디자인을 도용한 수상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 및 그밖의 미술저작물을 저작물로 판단하고 있고(저작권법 제4조 제4호), 하급심 판례 중 의류판매업체의 로고를 응용미술저작물로 판단하여 그 로고를 모방하여 동일하게 만든 디자인을 넣은 간판을 사용하고 홍보를 한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건의 로고는 디자인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디자인을 도용한 수상자 및 공모전 주최 측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도용자에 대해서는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등 참조). 다만 주최 측은 해당 로고 디자인의 사용이 저작권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 이전의 사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침해중지 요청 이후에도 동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서울

분쟁 대상 정부공공기관

피해 내용 공모전 수상작이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대응 방안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05

중국에서 제 브랜드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제3자가 중국에서 자사의 'K'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중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대한민국이나 중국 모두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신청한 자에게 상표권을 허여하는 선출원주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먼저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각국에서 일정 정도의 인지도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K'의 대한민국 상표 등록 출원보다 중국에서 제3자의 상표 등록 출원이 먼저 진행되었고, 본인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사용을 주장하면서 상표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상표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제3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상표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중국에서의 상표 등록이 최근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는 적어도 2, 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상 추후 2, 3년 정도를 기다린 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면 시간의 경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상표권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싶다면 제3자와의 상표권 협상을 통하여 상표권을 양도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상품에 유사한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상표 등록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상표 등록 출원을 진행한다면 대한민국 내에서의 상표 등록 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중국 내 자사 브랜드 도용
대응 방안 문의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06

캘리그래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송에 내보낸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당사는 '0000'라는 캘리그래피를 제작하여 상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이를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송으로 내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방송을 제작한 업체 뿐 아니라 방송을 내보낸 업체도 법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캘리그래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캘리그래피는 문자 또는 문구를 손으로 개성 있게 표현한 그림 문자로, 창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문자, 미술 도구 및 컴퓨터 그래픽 등의 다양한 표현 수단을 이용해 회화와 같이 독창적인 도안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응용미술 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의 하나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저작권자에게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사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응용미술 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방송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즉, 방송 제작자(외주업체)뿐 아니라 이를 방송한 방송국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지한 후(내용증명이나 녹취 등의 증거자료 확보 필요)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였거나, 방송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그대로 올려둔 경우와 같이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전북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캘리그래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제작업체와 방송한 업체 모두 책임을 지는지 여부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07

당사에서 제작한 상품 설명페이지의 권리보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당사는 국내 내의류 유명 브랜드들의 제품을 도매로 사입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웹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상품 판매에 필요한 사진 및 설명 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및 다수의 온라인 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구입해 가는 도매 업체들에게는 당사에서 제작한 상품 설명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업체들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신청 업체에서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창작물에 대한 내용부터 검토해 본 결과, 대상은 제품 사진, 상품에 대한 추가 설명, 웹디자인 레이아웃 등이었으며, 모방을 한 업체의 웹사이트를 확인해본 결과 웹디자이너의 성명 표시 부분까지 그대로 복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품 사진의 경우 사진을 찍은 사진가의 노력이 담겨져 있어야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의 경우 기존 제조회사가 제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일러스트나 문장 표현인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웹디자인의 경우에도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나 제품 설명의 배치 부분 등에 특징이 있는 레이아웃을 창작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으로 이를 도용한 제3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대구 및 경북지역

분쟁 대상

중소기업

피해 내용

상품 설명 페이지
무단 도용 및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08

중국 소재 업체에서 우리 회사 웹사이트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중국에 소재한 경쟁회사에서 제품 소개 페이지, 고객 문의사항 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 페이지 등이 저희 웹사이트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인터넷 웹사이트도 그 구성 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며, 레이아웃이나 메뉴 구성, 콘텐츠 구성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동종 업종의 다른 업체 웹사이트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여 레이아웃의 창작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례의 경우 독창성이 인정되어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도용한 업체는 중국 내 법인으로, 중국 내 영업을 목적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신청인 회사의 중국어 인터넷 웹사이트도 중국 내 영업을 목적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으며 중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경기

분쟁 대상

중소기업

피해 내용

웹사이트 화면 구성을
무단 도용한 해외업체
대상 권리 구제 방안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09

상표 출원을 했는데 타사로부터 등록 거절의 이의제기를 받았어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자사(A)는 2018년 00월 00일 “ㄹ”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권을 출원한 후, 2019년 00월 00일 이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B의 대리인 C가 상표의 유사함을 이유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을 근거로 A의 상표 등록 거절의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상표 출원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특허청은 이의답변서를 접수하고 이의신청서와 이의답변서를 검토한 후 상표 등록 결정 또는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합니다. 상표 등록이 결정되어 상표권이 설정 등록 되면(즉,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인은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무효심판이 기각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심결취소소송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의하여 상표 등록 거절이 결정되면(즉,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취소심판이 기각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심결취소소송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상표 등록 이의 제기에 대한 대처 방안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10

디자이너가 보유한 저작권 등록된 도안에 대해 향후 고객이 상표권 등록 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반려동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의뢰받아 로고 디자인을 제작·납품하였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해당 로고 도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고, 고객사는 현재 상표권 등록 과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사상표 분쟁 등 책임 소재에 관해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상표 개발의 경우 일반 미술 창작물(저작물) 개발과 달리 결과물인 창작물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작물을 상표(브랜드)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상표(브랜드) 개발자는 네이밍과 로고 등이 상표로 사용함에 있어 타당한지, 선등록 또는 선사용되고 있는 상표들을 조사하여 상표법에서 정한 법적권리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물 등록은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가 아니며 단지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창작일시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분쟁 발생 시 저작권 등록증은 일시와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개발자와 의뢰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행이 기준이 되며, 표준계약서 등이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경기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저작권과 상표권 등록의 권리 충돌 가능성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자사 제품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의 디자인 권리보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베개 커버, 패브릭 제품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에 대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록 절차 및 차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A는 2018년에 창업하여 현재 베개 커버, 패브릭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Z'라는 상표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베개 커버 및 패브릭 제품의 경우, 완제품 전체의 모양이나 형상 등을 보호받고 싶다면, 입체 디자인(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 총 7개의 도면이 필요)의 형태로 디자인 출원을 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패브릭 제품의 경우 패턴의 형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평면디자인(표면도 및 이면도 총 2개의 도면이 필요)의 형태로 디자인 출원을 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등록을 받은 경우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제3자가 동일한 제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 침해의 경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 침해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화해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A는 현재 'Z'라는 영문명을 상표 출원 했고, 별도의 국문명인 'Z'를 출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했는데, 'Z'에서 한글명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상표도 출원할 필요가 있고, 만약 영문명만 사용하면 굳이 한글명은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문명에 대해서만 상표 등록을 받더라도 제3자가 영문명이 아닌 한글명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이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출원을 2019년 4월에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까지 통상적으로 10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아마도 2020년 초쯤에 상표 출원에 대한 등록 여부가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디자인 출원도 상표 출원과 마찬가지로 10개월 가량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디자인 출원의 경우 디자인 출원을 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디자인 출원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을 하기 전에는 절대 온라인 등에 게재를 하지 않아야 하며, 아울러 상표 출원도 마찬가지로 상표 출원을 하기 전에 제3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을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상표 출원을 하기 전에 제3자가 출원을 한다면 본인의 상표 출원이 거절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개 커버나 패브릭 제품의 경우 모방이 용이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반드시 디자인 출원을 먼저 해야 하며, 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을 출시하기 전 상표 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부산분쟁 대상
기타피해 내용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디자인 권리보호 방안
문의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원 저작물을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기준에 존재하는 일러스트레이션과 형태는 비슷하게 유지하되 그 내부 구성요소, 즉 모티브나 문자, 표정 등에 변형을 가했을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성(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방성(의거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디자인보호법은 모방성(의거성)이 없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론,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전체적인 형태는 공유하되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일부 변경했을 경우 침해가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변경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기존 일러스트레이션과 유사하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인상이 확연히 달라져 누구에게나 다른 디자인으로 여겨진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변경한 디자인이 확정된 이후 법률전문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듯 하며, 이러한 과정이 여의치 않다면 전혀 다른 디자인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역
서울분쟁 대상
기타피해 내용
원 저작물
변형 가능 범위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13

다른 업체가 제 디자인을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웹사이트 디자인업체인 당사가 고객에게 구축해준 웹사이트 디자인을 다른 회사가 도용해 이를 상품화하고 다른 고객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문위원 의견

웹사이트 디자인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의 창작성을 가져야 하며, 타인이 자신의 창작물을 도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메뉴 구성이나 정보의 배열 등은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제시되지 않은 특별한 구성이나 배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 표현된 도안 등의 경우 그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웹사이트 제작업체가 웹사이트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메뉴 구성이나 정보의 배열 등을 도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웹사이트의 도안 등을 도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고소(저작권 침해죄 등)와 민사소송(손해배상, 침해금지처분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되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본 사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친고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안의 해결을 위해, 우선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고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

부산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디자인 도용으로 인한 피해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14

대학생 신분으로 현장 실습 당시 수행한 디자인 작업물과 그 권리는 소속 기업에 귀속되는 것인가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디자인 전공 재학생 신분으로 단기간 중소기업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디자인한 BI와 패턴 디자인 등의 작업물은 저작자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기업에 귀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에 관하여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및 그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참조).

저작권법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는 저작물일 것, 즉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관계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위 중소기업에서 실습하면서 실습시간에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고, 수정작업을 하였다면, 저작자와 위 중소기업 사이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실습시간 중 중소기업에서 한 디자인은 업무상 저작물로, 중소기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서울

분쟁 대상

중소기업

피해 내용

디자인 전공 재학생의 중소기업 현장실습 시 작업물에 대한 권리 주장 가능 여부 문의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15

당사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에게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협력업체를 통해 'A' 업체가 당사의 디자인과 똑같은 프린팅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도매-소매 단계를 거치기에 상기업체 외에도 모방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사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디자인보호법

신청인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된 상태이며, 그 권리도 유효하게 존속 중이고, 상대방이 정당한 실시권원 없이 신청인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 중에 있으므로, 신청인은 등록된 디자인권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과 같은 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경고를 한 후, 경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침해 행위를 지속할 경우 형사상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2. 저작권법

저작권의 경우에는 배른협약(또는 배른조약)에 따라 조약가입국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국가의 법령을 잘 검토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보호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국내에 널리 인식된 특정인의 상품출처표지, 영업출처표지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신청인의 디자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상품출처혼동행위(제2조제1호(가)목)나 영업출처혼동행위(제2조제1호(나)목)로는 보호를 받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역
대구/경북

분쟁 대상
중소기업

피해 내용
제품을 무단으로 프린트하여 사용한 사례에 대한 문의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16

여러 사람이 함께 제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당사는 고객의 의뢰로 캐릭터를 주요 요소로 하는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작업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를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의견을 제시하면 당사는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캐릭터는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탄생한 것인데, 이 경우 일러스트레이션 작가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고객사가 콘셉트를 제안하고, 자사에서 방향 설정 및 조율을 하고, 작가에 그에 부합하게 캐릭터를 제작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캐릭터를 최종적으로 표현해 낸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콘셉트 제안 및 의견 조율도 이 과정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기에, 향후 해당 캐릭터의 재산적 가치가 커졌을 때 저작권 귀속, 수익 분배 등에 의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계자들이 상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후 위와 같은 분쟁 발생을 대비해 서면 계약으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명확한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최초 계약 시 서로 서면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불편하고, 그러한 요구가 계약 성립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라도 상호간의 확정된 조건을 명확히 교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서울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여러 명이 참여한 캐릭터 제작의 저작권 귀속 여부 문의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17

고전 영화의 상업적 활용 시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고객사 측에서 고전 영화를 활용한 디자인 제품을 개발해달라고 합니다. 신사임당 조충도처럼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 이상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들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활용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 영화의 촬영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저작권이 소멸된 영화를 충실하게 재현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없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작권과는 별개로 해당 그림의 소장자가 제한을 걸어 놓은 경우에는 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역

대구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고전 영화의 활용 시
디자인 저작권 문의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18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업체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특정인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나무 인형에 그림을 그려 판매하고, 블로그 등 SNS에 올려 홍보 활동을 병행하던 중 제3자가 본인이 찍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캐리커처가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캐리커처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캐리커처가 실존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찍거나 그린 정도라면 누가 촬영하거나 그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진과 캐리커처의 저작물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속의 인물을 그대로 그렸을 경우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사진 속 인물이 아니라 사진을 찍은 제3자입니다. 사진 속 인물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히 사진 속 인물을 찍은 제3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역

광주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처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19

공동으로 판매 중인 상품의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공동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상표를 등록해도 되는지, 그에 따른 상표 출원 절차 및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상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브랜드를 직접 만들었다면 공동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단독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을 통해 공동으로 상표 출원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표법과 관계없이 계약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해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는 하나의 출원 서로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 등록 출원,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3.1.부터 “1상표 1류 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각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전북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공동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상표권 등록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20

과거 직장에서 작업한 디자인물을 당시의 직장 동료가 개인 이력 증빙 등에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이전 직장에서 앱 디자인 작업을 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1년간 함께 근무한 동료가 개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에 이전 직장에서 제가 수행한 작업물을 본인의 작업으로 게시해 허위, 과장으로 이력을 부풀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디자인 작업물은 해당 동료가 그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작업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의견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상기 규정에 의하면 전 직장인 앱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작업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전 직장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전 동료에 대해 신청인이 저작권자로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전 동료가 이직을 목적으로 이력서에 허위, 과장 이력을 기재한 부분은 이직하려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

서울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과거 직장에서 작업한 디자인 작업물을 당시의 직장 동료가 무단으로 이력 증빙에 사용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자사는 최근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 ‘F’라는 브랜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현재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될 만한 유사 상표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등록상표의 존재로 인하여 상표권 등록이 어렵다는 것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브랜드를 특별한 대책 없이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브랜드가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었을 때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상표권 침해 금지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 및 상표권 침해죄로 인한 형사고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등록상표의 존재로 인하여 상표권 등록이 어려울 경우 다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1방안

해당 브랜드를 변경하여 선등록상표와 전혀 다른 의미 및 느낌을 가지도록 하여 상표 등록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변경된 브랜드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다시 필요합니다.

제2방안

선등록상표가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한 후 만일 선등록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 119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방안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 협의하여 해당 선등록상표를 양도받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 세 방안 중 제1방안을 우선 검토한 후, 브랜드 변경이 불가능하면 제2방안을 검토하고, 제2방안의 추진 중에 제3방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분쟁 대상
기타피해 내용
신규 브랜드
상표 등록 여부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다른 회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문위원 의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창작한 캐릭터는 창작물이므로 저작물로 보호되며,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청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성립할 경우 저작권자는 아래와 같은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의 침해로 인정되며, 저작재산권 침해인 경우 저작권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는 저작권자가 침해한 신청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저작재산권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다음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는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이 침해 행위에 따른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만큼의 금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청구하거나,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현 시점에서 신청인이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저작권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 허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을 먼저 검토하신 후, 민형사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1차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광주분쟁 대상
기타피해 내용
애니메이션 캐릭터 저작권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고장 대응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국기 및 국가명을 아동 의류에 삽입해 디자인해도 되나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경과

당사는 아동 의류 브랜드 업체로서 다른 나라의 국기나 국가명을 이용한 디자인을 아동 의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상표법상 문제 되는지 여부

상표법상 이러한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며, 타인이 선등록상표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면 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호 및 나목에서는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 등으로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의 국기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누구라도 등록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기 등을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침해 상의 문제 또한 없어 상표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상 문제되는 여부

디자인보호법 또한 국기나 국가명의 사용 자체를 규정하는 법령은 없으며, 상표의 경우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등록불허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에서는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그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기 등은 디자인으로서 등록이 불가하므로, 침해상의 문제 또한 없어 디자인보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되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결국 등의 표지, 국기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단,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되는 사안은 '상표적인 사용'입니다. 상표적인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1호 및 판례에 따라, 표시 행위, 유통 행위, 광고 행위 등을 이용하여 해당 표장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표시 및 자타 식별 기능을 일컫는 행위를 말하며, 따라서 해당 국기가 디자인된 아동 의류를 유통, 광고, 계약 시 의류브랜드명을 통해 출처 표시가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의류업계에서 국기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디자인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해당 국가 등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형법상 문제되는지 여부

형법 제105조 및 제109조에서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징역/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의 목적으로 디자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서울

분쟁
기타

피해 내용
국기 및 국가명을 의류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상담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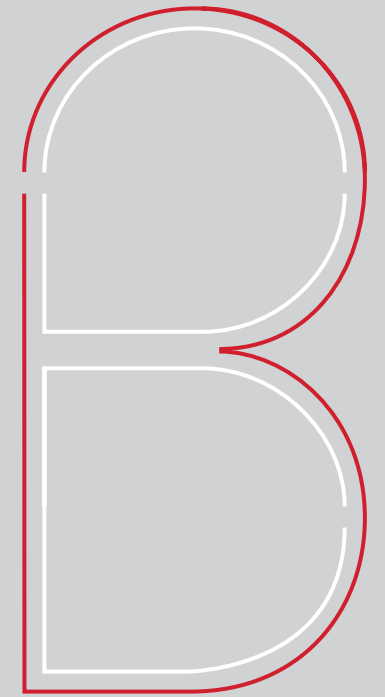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2019 KIDP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계약
관련

2019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01

저희 직원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회사 제품의 소재와 부품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 관련

사례 경과

우리 회사에서 2년째 근무 중인 직원 H가 가족 명의로 온라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같은 소재와 부품을 활용하고 디자인하여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 H와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01구 7465)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 사업장의 고용계약서는 겸직 금지와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계약서에 근거한 직원의 겸직 금지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직원 H를 해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직원 H는 가족 명의로 귀 사업장과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 및 직무를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귀 사업장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근로 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해고가 정당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원 H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회사 명함을 사용한 것을 통해 귀 사업장과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 및 직무를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귀 사업장이 해당 직원 H에 대하여 근로 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울산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상담 분야

계약 관련

02

계약 내용보다 과도한 추가 작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 관련

사례 경과

디자인 개발 완료 후 의뢰인 명의로 디자인 출원까지 완료하였으나, 의뢰인 측에서 계약서 상 과업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작업을 요청하며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계약서 검토 결과, 신청인께서 최종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 내용에는 개발 결과물로서 기 출원된 디자인 외에 파우치 형태의 부가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부가 디자인 요구 및 이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주된 의무는 과업 내용에 해당하는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의뢰인 명의로 그 결과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그 이행은 이미 완료된 것이며, 이 사건 계약 상 신청인의 의무가 아닌 부가 디자인 작업을 신청인이 이행할 것을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 상 자기 의무 이행의 조건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급명령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만약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도 잔금의 원금 액에 따라 통상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절차를 규정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광주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계약 의무 불이행

상담 분야

계약 관련

03

계약한 업체의 업무과실로 정부사업 지원이 무산되었을 경우,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계약 관련

사례 경과

정부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어느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과제 지원에 도움을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출기한에 맞추어 컨설팅 업체의 안내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당사가 지원조건 중 하나였던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그 자격조차 되지 않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은 계약 기간의 계약을 파기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전문위원 의견

해당 건으로 체결한 계약서 상에서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바로 계약해제를 통지하면 됩니다. 계약금 등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은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법원에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판결에 기초하여 컨설팅사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용역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분쟁 대상

중소기업

피해 내용

계약한 업체의 업무과실로
피해를 본 경우 대응 방안

상담 분야

계약 관련

04

공간/환경디자인 업체는 건축물 실시 설계에 참여할 수 없나요?

계약 관련

사례 경과

공공기관 시설과의 의뢰로 도서관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관련 조사를 수행하던 중 계약 담당과에서 본 건 실시 설계 계약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업체와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관련 규정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위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실시 설계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제23조 제1항 예외규정에 속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분쟁 대상

정부공공기관

피해 내용

실제용역 수행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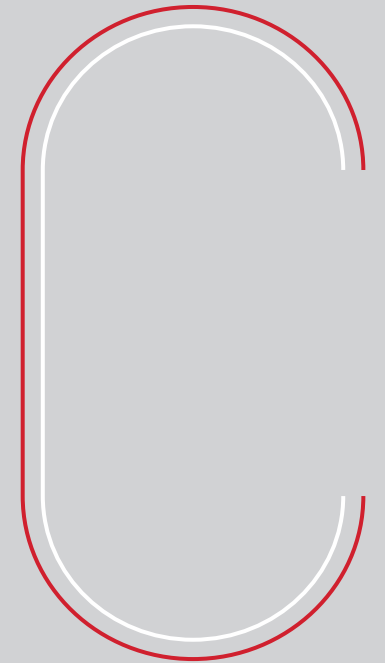
상담 분야

계약 관련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디자인
용역비
관련



2019 KIDP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2019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01

계약을 약속한 후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 용역비 관련

사례 경과

한 차례 디자인 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고객사가 동일한 범위의 용역과 금액으로 다시 디자인 용역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계약 체결 전에 디자인 작업 진행을 요청하여 이미 1회의 디자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직전에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범위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비록 고객사와 기 진행했던 계약 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양 당사자가 향후 디자인 용역계약이 체결될 예정임을 전제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단계에서 디자인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위의 경우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바, 상대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음을 입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준비 비용과 같은 신뢰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적극적 요청에 의하여 디자인 용역에 착수하였고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분쟁 대상
정부공공기관

피해 내용
계약 체결 약속 후 디자인 작업 진행했지만 일방적 계약 포기 통보

상당 분야
디자인 용역비 관련

02

간판 설치 견적을 제시한 후 디자인 시안을 제공하였으나 고객이 동일 시안으로 간판 설치를 완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용역비 관련

사례 경과

옥외광고업자로 간판 설치 문의를 받아 견적을 제시했습니다. 간판 시안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까지 완료되면 상의해보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어 알아본 결과 해당 시안으로 이미 간판 설치를 마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작업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간판 설치 용역계약의 체결 여부

간판 설치 비용을 구두로 안내하고 간판 시안을 제공했습니다. 구두로나마 간판 설치 비용을 해당 견적금액으로 약정하였다면, 간판 설치 용역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과 '간판 설치 비용을 얼마로 정하여 간판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간판 설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 여부

고객은 현재 해당 간판 시안과 동일한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바, 고객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충청북도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용역대금 청구 가능 여부 등 권리 구제 방안

상당 분야
디자인 용역비 관련

03

거래처에서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디자인 용역비 관련

사례 경과

자사(A)는 주식회사 B와 ‘ㅇ주상복합 CG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을 완성하여 주식회사 B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으나 주식회사 B는 자사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A는 두 차례에 걸쳐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계약을 완성하여 B에 용역계약에 따른 완성을 인도하였으므로 A는 주식회사 B에 이와 관련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B는 CG 관련 자료를 인도받은 때부터 A에게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B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A는 CG 관련 자료를 인도한 때부터 연 6%의 이율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A가 20xx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하고, 완성물을 B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디자인 용역 대금지급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나 관련 판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 제163조 제3호는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을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 163조 제6호는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대가를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를 5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디자인 용역 대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 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또는 민법 제 163조 제6호의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대가’에 관한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3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설에 의할 때, A가 CG 용역 관련 자료를 완성하여 B에 전달한 이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B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가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준으로 같은 날 일을 완성하여 B에 CG 용역자료를 전달하였다면, 다수설에 의할 때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재판 상 청구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있는 경우에 청구기각 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A는 소송에서 B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B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부산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용역비 미지급

상당 분야

디자인 용역비 관련

04

견적서 제시 후 진행을 요청받아 작업물 납품한 경우 용역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나요?

디자인 용역비 관련

사례 경과

대형마트 입점 상품 시리즈물로 디자인 작업하여 납품하고 수 개월 뒤 해당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추가 디자인 의뢰를 받았습니다. 시리즈물 연장선이었기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견적서만 제시하였고 고객의 진행 요청으로 납품을 완료하였지만 고객은 해당 대형마트 상품 입점이 내부 사정 상 보류되어 상품 출시가 안 되고 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위원 의견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합의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계약의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견적서, 이메일 및 결과물에 의해 고객이 디자인 용역을 의뢰한 사실, 용역대금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고객이 요청한 디자인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상품 출시가 안 된 점은 용역비 청구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분쟁의 해결은 합의 아니면 소송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디자인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중간적인 방법이 있으나, 해당 절차는 양자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고객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소송 제기 이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적 절차까지 가는 것을 염려해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효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분쟁 대상

중소기업

피해 내용

계약서 없이 용역 진행
납품한 경우 비용청구권

상당 분야

디자인 용역비 관련

05

고객사가 매각되어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 용역비 관련

사례 경과

외국어종합학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웹사이트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착수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은 받지 못한 가운데 고객사가 갑자기 매각되고 대표자도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위원 의견

고객사는 주식회사로, 고객사의 주식 매각 및 대표이사의 변경은 신청인의 고객사에 대한 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잔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고객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고객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 전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진행되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마련한 조정안(접수 후 3개월 안으로 제시)에 서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서울

분쟁 대상

중소기업

피해 내용

고객사가 매각되어 대표자 변경되었을 경우 잔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

상담 분야

디자인 용역비 관련

06

웹사이트 리뉴얼 작업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공급자가 웹사이트 디자인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디자인 용역비 관련

사례 경과

기존에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일부를 리뉴얼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던 중 최종 납품받은 결과물이 기존 사이트의 시스템과 충돌하여 기존 사이트의 웹사이트 디자인이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상대 업체는 과업의 종료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검수불합격 공문을 보내 최종 수정까지 완료해야 함을 통보했고, 다른 개발자를 투입하여 별도 디자인 작업과 웹퍼블리싱 작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분쟁상대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리뉴얼 계약서 문구 및 계약 당시의 정황, 계약 초기에 기존 서버 정보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웹사이트에서 활용 가능한 디자인 및 퍼블리싱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리뉴얼 계약에 따른 개발 완료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 요청과 최종 검수 불합격 통보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급자를 상대로 리뉴얼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개발 완료 시점에 수요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으나 해당 건 리뉴얼 계약에 의할 때 인수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개발비 지불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용역 종료 또는 개발비 지불 완료 전에 디자인 및 퍼블리싱 작업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웹사이트를 오픈한다면, 공급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충남

분쟁 대상

디자인전문회사

피해 내용

웹사이트 리뉴얼 작업 관련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

상담 분야

디자인 용역비 관련

발주처가 계약 사항과 다르게 무리한 디자인 시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한 디자인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자인 용역비 관련

사례 경과

자사(A)는 B와 C청년몰 조성 사업에 관련한 디자인 및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B측은 무리한 디자인 시안 변경을 요구함과 동시에 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두로 계약을 하고 작업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자사의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용역비 청구에 관한 법적 방안에 대해 도움 요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사는 201x년 xx월 xx일, C청년몰과 최종 시안을 확정했으므로 귀사에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C청년몰에게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금에 대한 지급 요청 후에도 C청년몰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사는 지급명령신청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귀사는 선행적으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에 관하여 용역계약서 제14조 제1항은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 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을이 용역대금 전부를 갑으로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C청년몰로부터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디자인 소유권은 여전히 귀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사의 디자인 설계가 저작권법상 응용 미술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청년몰이 귀사의 동의 없이 위 디자인을 이용한다면 귀사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두계약에 대하여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7다242867) 따라서 귀사와 C청년몰 사이에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하고, 처분문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귀사가 다른 자료(견적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결과물 등)에 의해 당사자, 계약의 목적, 대금 등을 증명한다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사가 구두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한다면 귀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C청년몰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울산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용역비 청구 및 디자인의 법적 보호

상담 분야

디자인 용역비 관련

고객이 해외 소재 기업일 경우, 미지급된 용역비를 어떻게 지급받아야 하나요?

디자인 용역비 관련

사례 경과

베트남 소재 음식점체와 신제품 패키지 디자인 및 브로슈어 제작 등의 디자인 과업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범위 및 정산 합의 등의 내용이 담긴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선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 완료된 계약 건의 잔금과 신규 프로젝트의 선금 및 출장 비용 등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이메일을 이용해 수 차례 요청하였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고객사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 계약금 체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도 되는지, 또한 비용 미지급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SNS 채널 공개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법에 의할 때, 신청인이 상대방 회사의 페이스북과 신청인 웹사이트에 상대방 회사의 용역 대금 미지급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미지급 해결방안

중재법은 ‘①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제9조 참조) 해당 디자인 용역계약에 의할 때, 체결된 각 디자인 용역계약의 준거법은 베트남 법이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에 회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객사와 정산 합의를 마쳤으므로, 고객사가 그 지급의무 자체에 대해 다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분쟁 발생 시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에 중재를 신청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서울

분쟁 대상

기타(해외기업/베트남)

피해 내용

고객의 용역비 미지급 건으로 SNS 공개 가능 여부 및 해결 방안 문의

상담 분야

디자인 용역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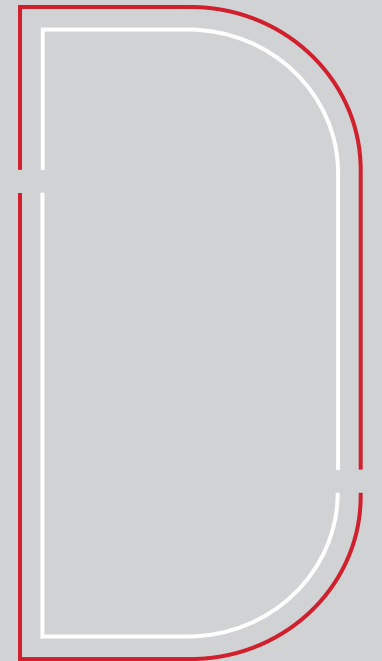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2019 KIDP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회계 및
노무
관련

2019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01

예비 창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계 및 노무 관련

사례 경과

잡화 제품의 도·소매 전자상거래 업으로 4월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예정에 있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상호는 정해 놓은 상황이고, 로고 디자인 역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후 사업 시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출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액의 1%로 계산되며, 반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10%를 적용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월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그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익년 1월 25일에 한 번만 하면 되고 만약 신고 결과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해 7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10%로 적용되어 부담이 커지며 부가세 신고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처럼 납부 면제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업의 매출 신고는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합산하여야 하며, 쇼핑 물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 해당 쇼핑물의 판매 자료를 수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첫해에는 간편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 사업 개시 2년차에는 1년차의 매출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는데 1년차의 매출이 3억 원 이상 이라면 2년차부터는 정규장부(복식회계)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이하라면 간편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본인이 직접 세무신고 업무를 하기 어렵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한 모든 지출(식대, 여비 및 교통비, 소모품비 등)은 전부 해당 카드를 사용하고 여타 모든 지출의 영수증을 챙겨 놓아야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쓸 경우 직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입수하고 근무일시를 기록하고 인건비는 직원의 통장에 송금하여 증빙을 남기면 확실한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역

부산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예비 창업자의 회계처리 방법 문의

상담 분야

회계 관련

02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등 비용 처리에 있어서 좋을까요?

회계 및 노무 관련

사례 경과

본인은 8년 정도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작년 5월 퇴사 이후 현재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천징수세액 3.3%를 공제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일하고 있고,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매우 고민이 됩니다.

자문위원 의견

본인이 수주한 업무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역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에서 외주 용역비는 비용(매입)으로 처리됩니다. 비사업자와 사업자의 차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의 여부이며 소득세 측면에서는 양자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인적 용역의 비용으로서 용역 수행과 관련한 모든 비용(여비 및 교통비, 접대비, 소모품비, 외주 용역비, 자료수집비, 통신비 등)을 챙겨서 처리하면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사업자를 내어서 사업을 영위함이 영업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처에서 용역비의 10%를 별도 지급하므로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업종이 전문디자인업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어 비사업자보다 세무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지역

부산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사업자 등록 시 세금 부과 기준 문의

상담 분야

회계 관련

03

잔금 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계 및 노무 관련

사례 경과

2019년 초 구미 소재 업체로부터 선금 50%를 받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여 전체 과업을 6월 말 종료했고, 7월 말 잔금 5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현재까지 잔금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 소개에 의해 수임한 작업으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있으며 각종 디자인 진행 상황에 따른 메일과 문자는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구미 소재 업체에서 계속 잔금에 대한 정산이 없을 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도급계약 체결 이후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견적서, 디자인 진행 상황에 따른 메일과 문자, 디자인을 완성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대구 및 경북지역

분쟁 대상

중소기업

피해 내용

잔금 정산에 관한 회계 문의

상담 분야

회계 관련

04

디자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의무 가맹을 해야 하나요?

회계 및 노무 관련

사례 경과

세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의무 가맹 해당 업체입니까? 둘째, 협력업체에 신용카드 결제를 위탁할 경우 수수료로 얼마 정도를 지급해야 할까요? 셋째, 신용카드 가맹을 저렴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제로페이도 가능할까요?

자문위원 의견

소득세법 제162조 제2항(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발급 의무 등)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법률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의무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가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지도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의 수입(매출)이 2천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도 대상자가 됩니다.

지역

대구 및 경북지역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신용카드 가맹에 대한 회계 문의

상담 분야

회계 및 노무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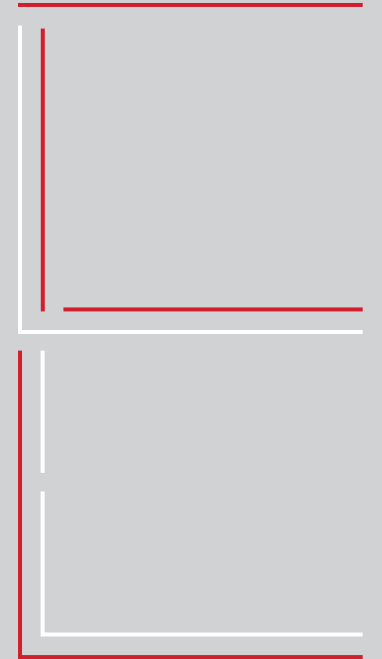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2019 KIDP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2019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01

이미지 도용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해당 이미지 구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례 경과

본사가 용역 대행한 A사 게시 콘텐츠 중 일부 이미지에 대해 저작물 이용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는 이미지의 구입으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추가적 손해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문제시 되는 이미지 날개 구입만으로 배상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 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7.15. 선고 2014다82385 판결).

문제가 된 이미지 저작물 외 9컷을 공공기관의 SNS 마케팅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픈라이선스 이용료를 지급 후 사용했어야 함이 명백해 보입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 지급하였을 금액인 '오픈라이선스 이용료'가 손해배상금액이 된다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된 이미지들을 날개로 구입하는 것만으로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는 저작권자와 직접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SNS 채널 2018.12. 운영 이후 현재 중단, 저작물 위반 확인 즉시 게시물 삭제로 추가적 손해방지 노력 인정 여부

SNS 채널의 중단, 저작물 위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는 추가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이미지 다운로드 시 공공기관 라이선스 상품 설명의 모호성에 대한 '고의성 없음' 주장 가능 여부

유선 상으로 질의 취지를 문의한 결과,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로서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거나 손해부담 공평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 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상품 설명 페이지 하단에 관련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고,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정독하지 않은 채 상단에 있는 내용만 보고 착오하여 공공기관 라이선스를 가입한 후 이 범위 이상으로 사용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가해자 측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명백히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이 감액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관련 내용을 아예 적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상품 설명 페이지 하단에 이를 적시하였으며, 단지 이를 잘 보이게 상단에 적시하지 않아서 구매자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부산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이미지 저작권 위반

상담 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2

서체 업체에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문제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례 경과

서체가 포함된 디자인 결과물을 납품했으나 해당 서체의 제작업체가 고객에게 서체 프로그램을 위반하여 사용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해당 작업을 납품한 디자인 업체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서체 프로그램 사용 조건은 서체 프로그램을 입수할 당시의 조건에 따릅니다. 만약 입수 경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단복제로 간주됩니다. 무단복제의 경우 명백하게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므로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서체(폰트) 도안(이미지)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서체 프로그램(폰트 파일)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순히 서체가 사용되었다 해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서체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우선 입수 당시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 불법적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면 서체 업체와 합의되지 않는 한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서울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서체 프로그램 사용
저작권 위반 공문 수취에 따른 대응 방안

상담 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3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기본 제공 서체를 사용해 만든 CI를 온라인 상에 게시해도 괜찮은가요?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례 경과

3월로 구성된 CI중 마지막 3번째 열은 유료로 구입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있는 특정 영문서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미지화 했습니다. 고객이 과거에 CI를 이미지 형태로 웹사이트에 게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해당 3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서체(폰트) 도안(이미지)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서체 프로그램(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서체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서체가 사용되었다 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서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당초 서체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계약 상 지정된 용도 및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때에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서체의 이미지(형상)만을 사용한 것이라면 그것이 서체 프로그램에 의해 연출된 서체와 동일한 형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서체 제작사의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죄로 처벌(형사적 책임)받을 뿐만 아니라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료로 서체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서체 제작사에서 용도와 사용 범위를 지정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구입한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구입하였다면 해당 서체 제작사의 웹사이트 상에 올라와 있는 약관에, 오프라인에서 구입하였다면 프로그램에 동봉된 약관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만약 그 약관에 사용 용도에 관한 제한이 없다면 서체 프로그램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지역
서울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서체로 디자인 작업한 CI의 웹사이트 게시 가능 여부

상담 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4

제가 활용한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알고 싶어요.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례 경과

A는 B 구청에 PDF 파일을 납품하였는데, 서체 제작사의 지식재산권 부서에서 B 구청 기획감사실에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저작권 안내문을 보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HY폰트에 대한 인쇄물 라이선스는 보유 중이나 PDF 용은 라이선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A가 B 구청에 납품한 PDF 파일에 HY폰트가 사용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만약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저작권법은 폰트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폰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

반면 폰트 파일의 경우,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이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대법원2001.6.29. 선고 99다23246 판결). 폰트 파일의 저작자가 갖는 권리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이 포함되므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면(업로드) 저작자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로써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지역
부산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처 방안 문의

상담 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5

무료 폰트 사용 시 법적 문제가 없나요?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례 경과

당사는 무료로 배포된 폰트를 BI 및 CI 디자인 작업 시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형,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폰트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용 범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무료 폰트 사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의 경우에도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구성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서체 제작사 측에서 폰트를 온라인 상에 무료로 배포한 다음,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무법인 등에 위탁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이나 라이선스를 취득(구매)하라고 겁박하는 악질적 영업 행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무료 폰트라고 배포된 경우에도 배포사에 문의하여 그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대구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무료 폰트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

상담 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6

구청에서 요청한 특정 서체로 작업을 했는데, 서체 제작사가 저작권 침해로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례 경과

A 구청에서 주최하는 'B' 장터에서 사용할 서체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것을 그대로 그려서 제작했고, 이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는 A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금으로 실제 매출액(100만 원)의 세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 기준은 저작물을 이용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범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저작권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등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배상액은 사용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의성, 피해 구제 노력의 부족 등 고의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관련 규정 및 상도 의적으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므로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부산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서체 도용으로 인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대응 방안 문의

상담 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폰트를 외부 프리랜서가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례 경과

자사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부(공급자) 프리랜서와 디자인 공급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급자(프리랜서)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해 과업을 진행 중이며, 공급자에게 자사에서 보유 중인 폰트를 공유하여 자사가 판매할 상품을 제작할 경우 폰트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 측에서 폰트(재산권)를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문의 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프리랜서에게 구입한 폰트를 제공하는 것은 귀사가 가진 서체 사용 권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사와 서체 제작사가 맺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사용 권리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외부 프리랜서에게 별도의 서체 사용 권리 취득을 요청하시거나 프리랜서와의 디자인공급계약서 상에 향후 서체 저작권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역

대구

분쟁 대상

기타

피해 내용

외부 프리랜서의
폰트 사용 문의

상담 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2019 KIDP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2019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A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지식재산권 관련

- 01. 제3자의 디자인 도용 의혹 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2
- 02. 타사에서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3
- 03. 섬유공예품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나요? 24
- 04. 어느 공모전 수상작이 저희가 고객사에 납품한 로고 디자인과 매우 유사해요. 25
- 05. 중국에서 제 브랜드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26
- 06. 캘리그래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송에 내보낸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27
- 07. 당사에서 제작한 상품 설명페이지의 권리보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8
- 08. 중국 소재 업체에서 우리 회사 웹사이트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29
- 09. 상표 출원을 했는데 타사로부터 등록 거절의 이의제기를 받았어요. 30
- 10. 디자이너가 보유한 저작권 등록된 도안에 대해 향후 고객이 상표권 등록 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1
- 11. 자사 제품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의 디자인 권리보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2
- 12. 원 저작물을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나요? 33
- 13. 다른 업체가 제 디자인을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34
- 14. 대학생 신분으로 현장 실습 당시 수행한 디자인 작업물과 그 권리는 소속 기업에 귀속되는 것인가요? 35
- 15. 당사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에게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36
- 16. 여러 사람이 함께 제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37
- 17. 고전 영화의 상업적 활용 시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38
- 18.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업체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9
- 19. 공동으로 판매 중인 상품의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40
- 20. 과거 직장에서 작업한 디자인물을 당시의 직장 동료가 개인 이력 증빙 등에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41
- 21.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상표권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42
- 22.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고장을 받았어요. 43
- 23. 국기 및 국가명을 아동 의류에 삽입해 디자인해도 되나요? 44

B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계약 관련

- 01. 저희 직원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회사 제품의 소재와 부품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48
- 02. 계약 내용보다 과도한 추가 작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9
- 03. 계약한 업체의 업무과실로 정부사업 지원이 무산되었을 경우,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50
- 04. 공간/환경디자인 업체는 건축물 실시 설계에 참여할 수 없나요? 51

C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디자인 용역비 관련

- 01. 계약을 약속한 후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54
- 02. 간판 설치 견적을 제시한 후 디자인 시안을 제공하였으나 고객이 동일 시안으로 간판 설치를 완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5
- 03. 거래처에서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56
- 04. 견적서 제시 후 진행을 요청받아 작업물 납품한 경우 용역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나요? 57
- 05. 고객이 매각되어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58
- 06. 웹사이트 리뉴얼 작업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공급자가 웹사이트 디자인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59
- 07. 발주처가 계약 사항과 다르게 무리한 디자인 시안 수정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한 디자인 용역비를 지급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
- 08. 고객이 해외 소재 기업일 경우, 미지급된 용역비를 어떻게 지급 받아야 하나요? 61

D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회계 및 노무 관련

- 01. 예비 창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64
- 02.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65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등 비용 처리에 있어서 좋을까요?
- 03. 잔금 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6
- 04. 디자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의무 가맹을 해야 하나요? 67

E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01. 이미지 도용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해당 이미지 구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70
- 02. 서체 업체에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문제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71
- 03.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기본 제공 서체를 사용해 만든 CI를 72
온라인 상에 게시해도 괜찮은가요?
- 04. 제가 활용한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알고 싶어요. 73
- 05. 무료 폰트 사용 시 법적 문제가 없나요? 74
- 06. 구청에서 요청한 특정 서체로 작업을 했는데, 75
서체 제작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 07.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폰트를 외부 프리랜서가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76

2019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2019 KIDP Case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 | |
|-------------|------------------------------------------------------------|
| 발행일 | 2019년 12월 |
| 발행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
| 집필진 | (사)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재) 부산디자인진흥원 (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재) 광주디자인센터 |
| 디자인 | 미디어 |
| 편집 | 강경탁 |
| 주소 |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
| TEL | 031-780-2046 |
| FAX | 031-780-2040 |
| 웹사이트 | www.kidp.or.kr |

「2019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위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